

# 2026년 8월 사범대학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안내

2026년 8월 사범대학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가. 문의처 : 사범대학 교학실(032-835-8654)

- 마약류 중독여부 병원검진 관련 비용, 절차, 시간 등은 각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

나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접수

| 구분       | 세부내용   |
|----------|--|
| 신청대상     | ① [졸업예정자] 2026년 8월 학위취득이 예정된 자<br>② [졸업자] 사범대학 졸업자로 무시험검정 원서 미제출자<br>※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대상인지 <b>소속 학과에 확인 후 신청</b>   |
| 신청기간     | ▶ <b>2026. 7. 3.(금) ~ 7. 16.(목)</b><br>※ 기한 내 미신청시 <b>사정대상 제외</b> 및 <b>교원자격증 미발급</b>   |
| 신청방법     | ① 통합정보시스템 접속하여 <b>무시험검정신청</b><br>② ‘ <b>행정정보 공동이용</b> ’ 동의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br>③ ‘ <b>성범죄 경력 조회</b> ’ 동의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<br>④ 신청 후 ‘ <b>무시험검정원서출력</b> ’ 으로 신청사항 확인<br>⑤ ‘ <b>마약류 중독여부 증빙서류</b> ’ 등 필요서류 제출  |
| 제출서류     | ① <b>마약류 중독여부 증빙서류</b> (필수)<br>- 신청자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, <b>검사결과통보서</b> 또는 <b>진단서 원본 제출</b><br>- ‘ <b>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</b> ’ 이라는 <b>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</b><br>- <b>마약4종검사</b> 또는 <b>TBPE검사 및 대마계선별검사</b> 등을 통해 발급받은 문서여야 함<br>- 신청기간 중 사범대학 교학실 <b>방문</b> 또는 <b>등기우편</b> 제출<br>※ 주소 : (21999)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, 미추홀별관A동 315호(사범대학 교학실)<br>-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<b>1년 이내*</b> 에 검진·발급된 경우만 인정<br>예) 2026. 7. 3.(금)에 신청하는 경우, 2025. 7. 3.(목) 이후 검진·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<br><br>② <b>기본증명서</b> (선택)<br>-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제출 |
| 교원자격증 발급 | ‘ <b>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</b> ’ 제출자에 한하여 <b>교원자격검정령</b> 에 의거 적격심사 진행<br>- 교원양성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자 : <b>2026. 8. 21.자</b> 교원자격증 발급<br>- 교원양성위원회 심의결과 부적격자 : <b>교원자격증 발급 불가</b>  |

**다.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조회**

| 구분               | 세부내용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조회대상             | ▶ 2021. 6. 23. 이후 교원자격검정 대상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관련근거             | <p>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(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)<br/>                    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(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)</p> <p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</li> <li>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</li> <li>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</li> </ul> </li> <li>3. 성인에 대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</li> </ol> <p>[본조신설 2020. 12. 22.]</p>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성범죄경력 확인         | <p><b>[성범죄경력 일괄조회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‘행정정보 공동이용’, ‘성범죄 경력 조회’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범대학에서 범죄경력 일괄 조회(법률 시행 전 범죄경력도 조회 대상)</li> <li>-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, 본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사범대학으로 원본 제출</li> </ul>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     | <p><b>[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절차]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25%;">신청인(개인)<br/>병원 검진</td> <td style="width: 5%; text-align: center;">➡</td> <td style="width: 25%;">의료기관<br/>검사 후,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</td> <td style="width: 5%; text-align: center;">➡</td> <td style="width: 25%;">신청인(개인)<br/>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</td> <td style="width: 5%; text-align: center;">➡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교원양성기관<br/>제출서류를 통해 중독여부 확인</td> </tr> </table> <p>※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,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</p> <p><b>[중독 여부 진단 방법]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1차검사*</td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음성 반응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검사결과통보서 발급·제출</td> <td style="width: 45%;">- 병원 방문 수령, “양성/음성” 결과 기재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양성 반응</td> <td>2차 검사(음성) 또는 의사 상담 후, 진단서 발급·제출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-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“양성” 반응 시 진단서 제출 필요<br/>                     -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여부를 추가 진단<br/>                     - 병원 방문 접수, 의사 상담 후 수령<br/>                     ( ‘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’ 문구 포함)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/table> <p>*중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</p> | 신청인(개인)<br>병원 검진                | ➡   | 의료기관<br>검사 후,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     | ➡ | 신청인(개인)<br>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| ➡ | 교원양성기관<br>제출서류를 통해 중독여부 확인 | 1차검사* | 음성 반응 | 검사결과통보서 발급·제출 | - 병원 방문 수령, “양성/음성” 결과 기재 | 양성 반응 | 2차 검사(음성) 또는 의사 상담 후, 진단서 발급·제출 | -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“양성” 반응 시 진단서 제출 필요<br>-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여부를 추가 진단<br>- 병원 방문 접수, 의사 상담 후 수령<br>( ‘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’ 문구 포함) |
| 신청인(개인)<br>병원 검진 | ➡   | 의료기관<br>검사 후,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| ➡   | 신청인(개인)<br>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| ➡ | 교원양성기관<br>제출서류를 통해 중독여부 확인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1차검사*            | 음성 반응   | 검사결과통보서 발급·제출                   | - 병원 방문 수령, “양성/음성” 결과 기재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  | 양성 반응   | 2차 검사(음성) 또는 의사 상담 후, 진단서 발급·제출 | -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“양성” 반응 시 진단서 제출 필요<br>-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여부를 추가 진단<br>- 병원 방문 접수, 의사 상담 후 수령<br>( ‘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’ 문구 포함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